

부산지방법원 2024. 10. 8 선고 2023가단36334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등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흥대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변론 종결2024. 9. 10.

판결 선고2024. 10. 8.

주 문

1.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

가. 피고 B, C, D, E는 피고 F에게 별지 2 상속지분의 표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02. 10. 8. 접수 제182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,

나. 피고 F는 원고에게 2002. 10. 8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가. 피고 B, C, E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나. 피고 D, F : 자백간주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조윤정

별지